

## 후원회 해산신고서

문서번호

명 칭 ( 약 칭 )

해 산 사 유

해 산 연 월 일

후원회를 위와 같이 해산하였기에 「정치자금법」 제19조제3항 본문 및 「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」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신고합니다.
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○○후원회 대표자 직인

○○선거관리위원회 귀중

※ 구비서류

1. 해산에 관한 회의록 사본 1부(자진해산시)
2. 후원회 지정철회서 1부(후원회 지정철회에 따른 해산시)

주: 후원회가 후원회 명칭에 약칭을 사용한 경우 "명칭(약칭)"란에는 「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」 제7조에 따른 후원회의 명칭과 약칭을 함께 기재합니다.